

2025년 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업 모집 공고

[드론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경기도 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드론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해 「드론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9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드론산업 육성 지원
 - 세부사업명 :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
- 주최/주관 : 경기도 / (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2월
- 사업목적 : 드론기업의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해 드론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성장 촉진

II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4년 4월 9일(수) ~ 5월 2일(금)
- 지원내용 : 특허출원, 인증 획득 및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내 드론 관련 중소기업*
 - * 본사나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드론 운용 및 제작기술 보유 중소기업
 - * 2025년에 타 시·도로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드론 유통 및 판매업은 신청불가 (공고문 내 [V.주의사항] 확인 필수)
- 지원규모 : 6개사 내외, 500만원/기업당
 - * 경기도 지원금의 30%이상 기업 현금부담 필수
- 수행기간 : 과제승인 통보일로부터 11월 28일까지

III

세부내용

□ 지원 분야별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 한도(건당)						
지식재산권	국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2,000천원						
	해외	PCT/디자인/상표 출원	3,000천원						
인증·시험분석	국내인증	제품 인증 또는 시험분석	5,000천원						
		경영 인증	5,000천원						
		품질 검증	3,000천원						
	해외인증	해외 인증	5,000천원						
마케팅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4,000천원						
	홍보물 제작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제작 (국문, 영문 등), 홍보영상	2,000천원						
	통·번역비	전시회 참가, 카탈로그 제작에 필요한 통·번역비* * 통·번역 의뢰업체 공식 요율표에 따름	1,000천원						
	조달등록	판로개척을 위한 조달등록/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련 비용 지원	5,000천원						
시험비행 (실증)	드론 시험비행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항목</th> <th>지원범위</th> </tr> </thead> <tbody> <tr> <td>시설 임차료</td> <td>시험비행을 위한 시설임차료 ※ 임차료 산정기준과 신청절차, 세금계산서(영수) 발행 등의 체계를 갖춘 공공기관(시설) 또는 대학교에 한하여 인정 (시설기관을 통한 임차 지원 불가)</td> </tr> <tr> <td>드론 보험료</td> <td>드론보험(영업배상책임) 가입에 따른 보험료</td> </tr> </tbody> </table>	지원항목	지원범위	시설 임차료	시험비행을 위한 시설임차료 ※ 임차료 산정기준과 신청절차, 세금계산서(영수) 발행 등의 체계를 갖춘 공공기관(시설) 또는 대학교에 한하여 인정 (시설기관을 통한 임차 지원 불가)	드론 보험료	드론보험(영업배상책임) 가입에 따른 보험료	3,000천원
		지원항목	지원범위						
		시설 임차료	시험비행을 위한 시설임차료 ※ 임차료 산정기준과 신청절차, 세금계산서(영수) 발행 등의 체계를 갖춘 공공기관(시설) 또는 대학교에 한하여 인정 (시설기관을 통한 임차 지원 불가)						
드론 보험료	드론보험(영업배상책임) 가입에 따른 보험료								

○ 신청방법 : 최대 지원가능 한도 내 신청기업이 지원 분야를 자율구성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수행내용 등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및 선정 기준

○ (평가방법) 서면평가

○ (평가기준) 지원의 적합성(25),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25), 실현가능성(30), 기대효과(20)로 구성

평가항목	평가내용
지원의 적합성(25)	지원의 필요성
	사업추진 의지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25)	최종목표의 명확성
	수행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30)	일정별 추진(제작)내용의 합리성(기간 등 고려)
기대효과(20)	지원 결과물 성과 활용 계획 및 성장 동력 확보에 따른 기대효과

- (선정기준) 평가위원회 종합점수 평균 60점 이상을 득한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우선승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후 사업 포기자 및 잔여예산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지원

* 동점자 발생 시 지원의 적합성, 목표 및 계획의 적합성, 지원의 적합성, 상용화 계획 및 파급효과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과제선정 및 지원방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이후 과제 승인 통보(전담기관 → 선정기업)
- 승인된 신청내역에 따라 선정기업은 과제를 추진하고, 과제 추진 완료 후 과제 추진결과(사업비 사용 내역 포함)에 대한 서류 제출
- 결과(증빙)서류 검토 후 신청기업의 계좌로 정산 입금

□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추진내용	일정
사업공고 및 홍보, 신청접수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5월 2일
선정평가	○ 1차 서류검토(신청기업의 자격요건 확인) - 범위반 기업 조회 ○ 2차 선정평가(외부전문위원 구성)	5월 셋째주
지원기업 선정 및 과제 승인 통보	○ 선정과제 승인 통보	5월중
과제추진	○ 선정기업은 승인된 신청내역에 대한 과제추진	-
완료보고서 제출·접수	○ 완료과제에 대한 결과(증빙)서류 상시 접수	~11월 28일
사업비 정산 및 지급	○ 결과서류 검토 및 사업비 정산을 통한 지원금 지급	서류접수 후 2주 이내

IV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5년 4월 9일(수) ~ 5월 2일(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사업공고)
- 제출요령 : 1개의 압축파일로 접수
(예시) (재)경기테크노파크_수요맞춤형지원.zip
- 제출서류 : 아래 표의 제출서류는 공고일(4월 9일) 이후의 서류로 발급·작성하여 제출

연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1	신청서 및 계획서	필수	제공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	필수	홈택스
2-1	공장등록증명	해당시	정부24
3	국세완납증명	필수	홈택스
4	지방세 납세증명서	필수	정부24
5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6	서약서	필수	제공서식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필수	제공서식
8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제공서식
9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인서	필수	제공서식
10	최근2개년 재무제표(2023년, 2024년)	필수	홈택스 등
11	최근 2년 이내 드론 사업(기술보유) 관련 매출 증빙	필수	-

V

주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드론 운용 및 제작관련 직접 기술이 없이 유통 또는 판매(도·소매)만 하는 기업
- 2025년에 경기도외 타시·도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지원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기업)
- 동일한 과제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공고기간 동안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 기업
- 과제 신청일 이후 사업기간 중 부도, 법정관리, 휴·폐업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기업
- 최신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선정 이후 과제추진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신청기업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 신청인(신청기업)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신청기업)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제재사실 공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의거해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적용법률
 - ↳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별첨]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참고

VI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드론사업 담당자 031)500-3159

경기도 고시 제2025-23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 17.
경 기 도 지 사

1.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3.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
가.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 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조례 적용 제외사업
 - 1) (계도·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 2) (사업운영비·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다수기업 지원사업
 -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 4) (자금·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 5) (시·군 보조(매칭)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른 시군 지원사업
 - 6) (소상공인 지원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 7) (투자유치 사업)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침·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조회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 위반 사실로 제한 기준 적용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 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 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나. 삭제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범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서식2)

10.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 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992, -2995)

붙임 1. (서식1)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서식2)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